

# 공 고 문

## 2020년도 개인택시 특별부제 [수조·하조] 신규자 신청 안내

1. 신청기간 : 2020.12.02 ~ 2020.12.30.
2. 장 소 : 개인택시조합사무실(1층)
3. 신청서류 : 아래 참조

- 아 래 -

부 제	수 조	하 조
목적	종교생활과 봉사활동, 택시운송사업의 병행을 위함.	개인택시 장애인전자의 신병치료 및 요양 등 기본생활권 보장과 원만한 택시업 운영을 위함.
운 휴	매주 수요일, 일요일, 첫째 셋째주 금요일	매주 화요일
대상자 선정	○ 대상자 선정은 매년 2회 (6월, 12월) ○ 면허대수 5/100 범위 내 선정	○ 대상자 선정은 매년 1회 (12월) ○ 면허대수 5/100 범위 내 선정
대 상	①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인천운전기사 선교회, 사도회, 불교회, 봉사회에 가입한 회원. ②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 제6조에 등록된 기관으로부터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서를 발부 받은 자로써 자원봉사 실적이 년 48시간 이상인 사업자.	①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선천적·후천적인 장애로 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”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적용대상자 중 상이 등급이 3급 이상이 사업자.
신 청 서 류	① 인천운전기사 선교회, 사도회, 불교회, 봉사회 회원임을 증명하는 서류. ②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 규정 제6조에 등록된 기관으로부터 발부한 년 48시간 이상의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 내역서  ※ 기존 수조 조합원은 봉사실적(48시간 이상) 제출.	① 장애정도가 기재된 복지카드(사본) ② 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” 로 기재된 공공기관에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 ③ 최근 3개월간 동일병명 또는 질병으로 치료한 진료확인서 ④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[국가유공상이자 ③, ④만 제출]  ※ 기존 하조 조합원은 복지카드(사본), 연간 병원 진료현황(진료확인서) 제출.

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